

Ⅲ. 환경 정책 : 5월 중 주요 환경법 개정(안) 내용

■ 울산공단 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

(1) 개요

- 울산지역 대기 질 개선을 위해 환경부는 울산·온산공단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기로 함
 - ‘엄격배출허용기준’과 ‘특별배출허용기준’을 새로 상정해 빠르면 2001년부터, 늦어도 2002년부터는 적용할 계획임

(2) 주요 내용

- 소각시설의 중금속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

< 소각시설의 중금속 및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 >

시 설	현 행	신 규(안)	비 고	
기존 시설	카드뮴 화합물	해당 없음	0.02~1 ppm	소각 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
	납 화합물	배출기준 없음	0.2~5 ppm	
	크롬 화합물	해당 없음	0.5~1 ppm	
	구리 화합물	해당 없음	10 ppm 이하	
	아연 화합물	해당 없음	10 ppm 이하	
	일산화탄소	400 ppm 이하	50~300 ppm	
신규 시설	카드뮴 화합물	1 ppm 이하	0.02~1 ppm	
	납 화합물	배출기준 없음	0.2~5 ppm	
	크롬 화합물	1 ppm 이하	0.5~1 ppm	
	구리 화합물	10 ppm 이하	5 ppm 이하	
	아연 화합물	10 ppm 이하	5 ppm 이하	
	일산화탄소	400 ppm 이하	50~300 ppm	

○ 가스상 물질인 암모니아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도 배출시설별로 강화함

< 가스상 암모니아의 배출허용기준 >

시 설		현 행	신 규(안)
기존 시설	화학비료	50 ppm 이하	30 ppm 이하
	안료 및 염료	70 ppm 이하	40 ppm 이하
신규 시설	화학비료	50 ppm 이하	30 ppm 이하
	안료 및 염료	70 ppm 이하	30 ppm 이하

■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(안)¹⁾

(1) 개요

- 소각시설 규모별로 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차등 적용하여 소각시설로부터의 다이옥신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함
 - 시행 후 5년까지 규제기준 달성을 위한 경과시간을 두는 등 배출기준을 단계별로 강화해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

(2) 주요 내용

○ 소각용량별 다이옥신 배출기준(안)

시설별 규모별 (톤/시간)	신설 (ng-TEQ/Nm ³)	기존(ng-TEQ/Nm ³)		
		시행 후 2년 내 (권고 기준)	시행 후 3~5년 (규제 기준)	시행 후 6년부터 (규제 기준)
4 이상	0.1	20	20	1
2~4	1	40	40	5
0.2~2	5	40	40	10

1) 국립환경연구원에서 2000년 5월 10일 발간한 ‘중·소형 소각시설의 배출허용기준(안) -다이옥신 및 대기오염물질-’에서 발췌함